KOSHA Guide C-39-2023

지보공의 배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.

- (7) 배수를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·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접지를 실시함을 물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는 안전보건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0장 (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)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9) 도시가스의 누출,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또한 이들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7.1 (8)항을 참고한다.
- (10) 위험 장소에는 작업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(11) 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기는 작업 전·중·후, 비온 후,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 하여야 한다.
- (가) 전 지표면의 답사
- (나)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
- (다)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
- (라) 용수의 발생 유·무와 용수량의 변화 확인
- (마)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
- (바)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, 탈락 유·무

7.2 인력굴착

7.2.1 일반사항

- (1) 인력굴착 작업은 가급적 단독작업을 피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.
- (2) 인력굴착 작업 시 삽이나 곡괭이 사용으로 인한 작업자 상호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는 충분한 거리(삽이나 곡괭이 사용 시 2m이상)를 유지해야 한다.